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5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 경감의 적용기한이 2022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 규정에 대하여 그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 나.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 오락장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경감의 적용 기한이 2022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안 제10조의2 삭제)
- 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 로,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로, “대하여” 를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나목에 따른” 으로, “2024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3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2027년 12월 31일

제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
급대상인 무허가건물-----
--- 2027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illegible]

제8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한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 원 미만인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 원으로 한다.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 2027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2027년 12월 31일-----
-----.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 제2조제7호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 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7년 12월 31일

-----.

제10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2년 5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제10조의3(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10조의3(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 ----- ----- ----- <u>2027년 12월 31일</u>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기존 감면조례의 기한 연장 및 코로나19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 규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어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세무1과장 이경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지정자연유산(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자연유산 : 「자연유산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을 할 때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법」 제27조 및 「자연유산법」 제41조에 따라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의 사항은 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 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 등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